

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의 미래

서울연구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 목 2018년 직원능력개발 및 교육훈련계획 시행

1. 직장협의회 규정 제19조(의결사항)1호와 관련입니다.
2. 2018년 1분기 직장협의회 정기회 개최(인사복지팀-963(2018.03.22))에서 '2018년 직원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계획'이 의결되었기에 불임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.

가. 관련근거 : 직장협의회 규정 제19조

제19조 (의결사항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- 1)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- 2)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- 3)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4)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
- 5)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